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 10. 27

###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957호, 2008. 3. 21 개정, 2009. 3.22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자발적협약의 체결시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목표, 이행기간 및 투자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자발적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25조의2)

- (1) 법 제34조의8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배출자·재활용사업자·제조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발적 협약의 내용·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자발적협약의 체결시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목표, 이행기간 및 투자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자발적협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자료의 제출과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3) 자발적협약의 내용과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자발적 협약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02-2110-6947 또는 6950, FAX:02-504-9289, 전자우편:ansh@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령 제301호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08. 10. 6

### 1. 개정이유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배출허용총량 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036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최적방지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최적방지시설의 종류(안 제2조의2 및 별표 1 신설)

-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별로 최적방지시설 및 기준농도를 구체적으로 정함.

#### 나. 저공해자동차의 제작자 배출허용기준 등(안 제3조, 제4조 및 별표 2)

- (1) 일반 제작자의 배출허용기준이 2009년 1월 1일부터 강화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연료에 액화천연가스를 추가하고, 제2종 가스자동차의 배기관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종전의 킬로미터당 0.0063그램에서 0.00625그램으로 강화하는 등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 (3) 이와 같이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수도권의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이의신청의 절차와 결정통지(안 제15조의2 신설)

-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내용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장 등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함.

#### 라.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절차(안 제31조의2 신설)

-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를 면제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의 확인을 받거나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보증기간 동안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면제함.



# 환경법규

## 마.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신설(안 제31조의3)

-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관련 부품을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점검하며, 차량을 정비하도록 함.

환경부령 제302호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08. 10. 10

## 1. 개정이유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공개(안 제7조제4항 신설)

- (1) 신축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동주택 계시판 등에 일정기간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입주민이 그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함.
-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축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3) 이와 같이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 시공자의 실내공기질 개선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조정(안 별표 5)

- (1)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2)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을 종전에 접착제는 제곱미터당·시간당 4밀리그램으로 하고 일반자재는 제곱미터당·시간당 1.25밀리그램으로 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2010년까지는 제곱미터당·시간당 0.5밀리그램으로 하고, 2011년부터는 0.12밀리그램으로 하며,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은 종전에 접착제는 제곱미터당·시간당 10밀리그램으로, 일반자재는 4밀리그램으로 하던 것을 접착제는 2밀리그램으로 강화하고, 일반자재를 건축자재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그 기준을 조정하고, 톨루エン 방출기준을 신설하여 제곱미터당·시간당 0.08밀리그램으로 함.
- (3) 이와 같이 방출기준을 신설·강화함으로써 건축자재로 인한 국민의 건강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